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최소적립의무 및 자율시정기간 안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의무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의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산출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사외적립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적립금이란?

기준책임준비금에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소적립금이라고 합니다.

* 기준책임준비금

사용자가 DB제도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최소적립비율은 '22년 이후 100%이며, 과거 근로기간 소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고용노동부

Q1 적립 부족 시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 1 퇴직금 청구 시 사외적립금에서는 적립비율만큼만 지급하며, 나머지 부족 금액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적립비율이 최소적립비율의 95% 미만이라면, 부담금 납입을 통하여 1년 안에 부족한 비율의 1/3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Q2 적립 부족 해소 조치는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사업연도란 결산월을 의미하므로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결산월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합니다.

(예: 2023.12.31. 결산월/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 2024.6.1. 인 경우 → 2024.12.31.까지 적립 부족 해소하여야 함)

Q3 적립하면 사용자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 1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으며,
- 2 퇴직급여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하며, 부채비율 개선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Q4 얼마를 적립하여야 하는지 미리 알 수는 없나요?

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중 간사기관에게 부담금예측서비스(모의재정검증)를 요청하시면 예상 필요 적립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여부는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상이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 요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

- 기 간** 2024.11. ~ 2025.6.
- 대 상** 확정급여형(DB형) 도입 사업장의 사용자 및 퇴직연금 담당자
- 내 용** 사업장 자율적으로 최소적립금 부족분에 대한 해소(추가 적립) 실시
- 유의사항**
 - 자율시정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적립 부족 여부는 재정검증 기준일자(결산연월)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전에 적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폐업·도산 등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조치(폐업 신고, 규약 폐지 등)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각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